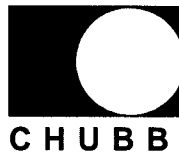


(주의) 아래의 내용은 전체에 대한 개요에 불과하므로,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고에서의 담보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고,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, 실제 발행 증권 상 담보조건 및 보험약관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므로, 반드시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 운송보험 가입안내

## (Inland Transit Insurance)

저희 페더럴인슈어런스컴퍼니 한국지점은 이 안내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내용이 가능한 새롭고 정확한 것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는 단지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, 그 내용의 정확성이나 독자의 오해에 대해 저희 페더럴인슈어런스컴퍼니 한국지점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로 인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



페더럴인슈어런스컴퍼니 한국지점

## 보험조건/담보내역

### ① 전손담보

- 보험에 가입된 화물이 유상(호수와 하천포함)에서 운송되는 도중에 운송용구의 탈선, 전복, 추락, 화재, 폭발 또는 충돌에 기인한 화물의 전부손해를 담보합니다.
- 하역, 이적중에 보험목적물의 추락으로 생긴 매개당 전부손해를 담보합니다.

### ② 전손 및 분손담보

- 보험에 가입된 화물이 육상(호수와 하천포함)에서 운송되는 도중에 운송용구의 탈선, 전복, 추락, 화재, 폭발, 충돌로 인한 화물의 손상을 담보합니다.
- 하역 또는 이적중에 보험목적물의 추락으로 생긴 매개당 전부손해를 담보합니다.

### ③ 전위험담보

- 보험에 가입한 화물에 대하여 아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하고는 육상(호수와 하천을 포함합니다)에서 운송되는 도중에 생긴 모든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#### 보상하지 않는 손해

-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
- 운송지연
- 포장의 불완전
- 이사화물의 독, 향아리등의 파손, 이에 수용한 유동품의 멸실
- 화물의 고유의 하자, 자연소모
- 핵연료물질 방사능오염에 기인한 사고
- 전쟁으로 인한사고

## 특별약관 담보내역

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서 아래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별도약정이 있어야 담보됩니다.

- 운송되는 화물이 야적되거나, 무개화차, 완전히 피복되지 않은 운송용구에 적재되는 경우(단, 유개화차에 적재했더라도 발생되었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함)
- 지진(지진에 의한 해일을 포함), 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
-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기화물을 자기소유의 차량으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손해
- 동맹파업, 태업, 작업장폐쇄, 정의행위, 폭동, 억류, 압류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
- 냉동냉장고 및 냉동냉장기계장치 (냉동냉장기계, Fan, 기타부속기구 및 이들을 작동시키는 동력기계를 포함)의 파손이나 고장으로 인한 손해

## 부가위험 담보조건

운송보험 가입시에는 전위험담보조건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손 및 분손담보조건 또는 전손담보조건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부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선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사 고 종 류	담 보 내 역
우담수유손	빗물, 민물, 기름등에 의한 손해
누 손	화물의 포장에 파손이나 구멍이 발생하여 내용물이 새어나오는 손해
오손 및 찰손	다른물체와 접촉하여 발생한 오염 및 긁힌 손해
도 난 불 착 손	화물의 도난 및 분실, 행방불명 등에 의한 미도착손해
파 손	우연하고 외래적사고, 취급부주의에 의한 화물의 부서지는 손해
곡 손	화물이 굽거나 휘어진 손해
단, 운송지연, 포장의 불완전, 고유의 하자, 자연소모,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등에 기인한 손해는 담보되지 않습니다.	

## 운송보험의 청약방법

- 운송보험의 대상 : 국내 내륙지역을 운송하는 화물 모두가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. 물론 개인이사화물도 포함합니다.
- 청약방법 : 운송하는 화물의 명세, 보험가입금액, 운송수단, 운송구간 보험조건 환적여부, 운송일자, 운송업자, 보험계약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약하여 주십시오.

## 보험(始期)/종기(終期)

- 운송인이 운송할 목적으로 보험의 목적물을 보험증권에 기재한 발송자의 보관장소(창고를 포함함)에서 반출(적재위험을 포함함) 할 때부터 시작합니다.
-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의 보관장소에 반입(하역위험포함) 되었을때나, 반입되기전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의 보관장소에 도착한 후 24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보험이 종료됩니다.

##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

- 보험가입금액은 화물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체결전에 결정해야 합니다.
- 화물가액의 110%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- 보험료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회사에 납입하셔야 합니다.
- 보험료 산정은 담보조건, 운송구간, 화물의 종류, 기타 조건에 따라 결정합니다.

##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

### 계약전 알려야 할 사항

-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의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
### 계약후 알려야 할 사항

- 보험계약 체결후에 열거된 “보험계약청약방법”에서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신 후 저희회사의 동의를 받으셔야만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.

###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

- 운송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본사 기업보험부 Tel(02 3705 9731 및 02 3705 9850)나 가까운 대리점,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  -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십시오.
    - 금융감독원 인터넷 주소 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
    -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(휴대폰 02-1332)
- ☞ Chubb보험그룹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지점  
주소 : 서울 중구 무교동 45번지 코오롱빌딩 8층(우 : 100-772)  
대표전화 : 02 3705 9700, 팩스 : 02 755 6278